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 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 · 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한다.

〈 표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 ·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 · 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유치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29조에 따른 공통의 교육 ·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의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2.『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 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 표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 ·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장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 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다.